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54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원이 · 오세희 · 서삼석
허종식 · 위성곤 · 김한규
서영교 · 이해식 · 김남근
서영석 · 최혁진 · 한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고, 유통표준 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1억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 본문 중 “제49조 또는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2조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

3의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9조제1항·제3항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u>10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 ----- ----- ----- <u>5년</u> ----- ----- <u>1천만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u>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삭 제></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삭 제></u>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제51조(양벌규정) ----- ----- ----- -----

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 6. (생략)

④ (생략)

---제49조-----

제5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

3의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